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948
------------	-------

발의연월일 : 2023. 6. 29.

발의자 : 한정애 · 최혜영 · 이성만
위성곤 · 강선우 · 장철민
송옥주 · 고영인 · 이원욱
안호영 · 김상희 · 윤미향
민홍철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 · 화초 ·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함.
하지만, 바다에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행위는 경주 앞바다 대왕암에 잠든 신라 문무왕이 대표적인 사례로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오래된 풍습이나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해양에 뿌리는 장사를 자연장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연장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장사시설 내 또는 해양의 일정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포함하고, 환경관리해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제10조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묻어”를 “묻거나 장사시설 내 또는 해양의 일정 구역에 뿌려”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구역”을 “구역(해양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묻기에”를 “묻거나 뿌리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묻는”을 “묻거나 뿌리는”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장한 유골을 해양에 뿌리는 행위는 「해양환경 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외의 해역에서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2. (생 략)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 · 화초 ·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u>묻어</u>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 ----- ----- ---- <u>묻거나 장사시설 내 또는 해양의 일정 구역에 뿌려</u> ----- -----.
4. ~ 12. (생 략)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4. ~ 12. (현행과 같음) 13. ----- ----- <u>구역</u> <u>(해양을 제외한다)</u> ----- ----
14. ~ 16. (생 략) 제10조(자연장의 방법) ①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u>묻기에</u>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14. ~ 16. (현행과 같음) 제10조(자연장의 방법) ① ----- ----- <u>묻거나 뿌리기</u> 에-----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화장한 유골을 <u>해양에 뿌리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및 「국토의 계</u>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문</u>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u>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외의 해역에서 하여야 한다.</u> ④ -----<u>문</u> <u>거나 뿐리는-----</u> ----- -----.</p>
---	---